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285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9. 22.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8.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555,967,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원고는 1993. 11. 9.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 및 관광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6. 5. 31.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 [redacted]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02. 12. 10. [redacted]시 C 일원에 관한 'D 관광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예정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03. 4. 22.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하고, 2006. 5. 4.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라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2011. 12월까지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06. 6. 26.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 도지사는 2008. 4. 23. 구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것은 '현행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C 일원을 'D 관광지 [redacted]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사건 투자지구'라 한다)로 지정([redacted]특별자치도고시 E)하였다.

○ 도지사는 2017. 2. 23. 현행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을 해제([redacted]특별자치도고시 F)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및 추징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일이 속한 2008년부터 원고 소유의 G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묶어서 '재산세 등'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를 감면받아 왔다(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 해제를 이유로 2017. 6. 8. 원고에게 G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건축물			토지			비고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 계	82,782,430	68,985,540	13,796,890	870,165,140	725,137,630	145,027,510	
2012년	18,858,280	15,715,300	3,142,980	179,715,560	149,762,970	29,952,590	2017.5월 과세
2013년	18,809,770	15,674,850	3,134,920	179,596,670	149,663,890	29,932,780	2017.5월 과세
2014년	14,320,450	11,933,750	2,386,700	179,341,650	149,451,380	29,890,270	2017.5월 과세
2015년	15,062,190	12,551,880	2,510,310	179,729,260	149,774,380	29,954,880	2017.5월 과세
2016년	15,731,740	13,109,760	2,621,980	151,782,000	126,485,010	25,296,990	2017.5월 과세

○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8.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세액만 추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으로 감액경정되고 남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려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법령에 추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추징의 근거가 되는 [redacted]특별자치도 조례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였고, 개정된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부칙의 이른바 '일반적 경과규정'은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감면의 근거

1)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07. 1. 3. 제정된 후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별지2] 기재 번호 순서대로 각기 '감면조례① 내지 ⑧'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감면조례'라 한다)가 제정되고, 2008. 4. 23.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redacted]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감면조례① 제41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일(원고가 공사에 착수한 2006. 6. 26.)부터 10년 동안의 재산세 등을 감면(편의상 과세표준 공제도 '감면'으로 지칭한다)받게 되었다.[1)]

2) 이후 조례 개정으로 감면조례②가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 고시(갑 제3호증)에서 원고는 '투자자'로 지칭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투자대상 사업이 곧 이 사건 개발사업이고 원고가 그 사업시행자인 점, 이 사건 투자지구는 구 특별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구 특별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감면조례②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1)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후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 제1항, 제3항보다 큰 폭의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그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투자지구 지정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2008. 6. 1.(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제114조 참조)부터 10년 동안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되었다.

3) 감면조례①과 감면조례②의 위 각 감면규정은 그 요건과 적용기간을 달리하고, 감면조례② 부칙 제3조가 원고에게 유리한 감면조례②의 감면규정(감면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등에 중복하여 적용된다.

나. 감면세액 추징의 근거 유무

1) 감면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이른바 일반적 경과규정, 즉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redacted]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각 부칙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 [redacted]특별자치도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라', 즉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종전의 추징규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더라도 그러한 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종전의 추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2) 이 사건 감면의 근거규정을 감면조례① 제41조 제2호, 제3호로 볼 경우, 그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의 근거는, 감면조례② 부칙 제3조에 따라, 감면조례① 제41조 단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후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⑦이라 한다)(위 법은 2006. 6. 30.부터 현재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별지2] 기재 번호 순서대로 각기 '조세특례제한법① 내지 ⑧'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2가 된다.

3) 이 사건 감면의 근거규정을 감면조례②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로 볼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그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의 근거는, 감면조례③ 부칙 제3조에 따라, 감면조례② 제41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⑦ 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가 된다.

4)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 해제는 조세특례제한법⑦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감면의 근거를 감면조례①이나 감면조례②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그 감면세액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추징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와 달리 위 감면세액에 관한 추징의 근거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반적 경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조례가 개정된 경우를 대비한 일반적 경과조치일 뿐,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까지 그 소급적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 등)를 들며 일반적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 주장의 취지는 결국 조례의 개정으로 감면의 근거규정과 추징의 근거규정이 함께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감면규정은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효력이 유지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추징규정은 조례 개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의 연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면조례② 내지 ⑧ 각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이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마련한 입법목적은 장기간이 요구되는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감면규정의 수혜자가 위 입법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고 감면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와 짝을 이루는 추징규정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입법자는 감면조례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을 마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항상 그에 대응하는 추징규정도 함께 마련하거나 삭제하여 왔으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규정과 추징규정이 함께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대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추징규정의 의의를 고려하면, 감면조례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 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유·불리는 감면규정과 추징규정이 한 짝임을 전제로 일체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를 분리하여 '감면규정은 삭제되면 불리하므로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해석하여야 하고, 추징규정은 삭제되면 유리하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삭제된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함께 삭제된 종전 추징규정의 효력만은 배제하겠다는 것이어서 형평의 관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 경과규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 원고는 최초에 감면조례①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으로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위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및 그에 대응하는 추징규정은 이 사건 감면 기간 내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즉 시기순으로 감면조례①, 조세특례제한법② 내지 ⑥, 감면조례⑥ 내지 ⑧에 위와 같은 규정이 이어져 왔고, 그 각 규정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은 모두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를 추징 사유로 삼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 추징 사유는 원고의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례들은 추징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2],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2) 대법원 2001두10639 판결은 감면규정이 납세자에 유리하게 개정된 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사안의 경우이고, 대법원 87누88 판결은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후 삭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사안의 경우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별지1]

표

(단위 : 원)

연번	과세 연도	건축물			토지		
		재산세	지방 교육세	계	재산세	지방 교육세	계
1	2014	11,933,750	2,386,700	14,320,450	149,451,380	29,890,270	179,341,650
2	2015	12,551,880	2,510,310	15,062,190	149,774,380	29,954,880	179,729,260
3	2016	13,109,760	2,621,980	15,731,740	126,485,010	25,296,990	151,782,000
합 계		37,595,390	7,518,990	**45,114,380**	425,710,770	85,142,140	**510,852,9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별지2]

관계 법령

▣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9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① 2007. 1.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이 표에서 '조례'라고만 한다) 제161호로 제정된 후 2009. 5. 11. 조례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② 2009. 5. 11. 조례 제488호로 개정된 후 2010. 12. 31. 조례 제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사용(「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2010. 12. 31. 조례 제674호로 개정된 후 2011. 12. 28. 조례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11. 12. 28. 조례 제818호로 개정된 후 2013. 6. 5. 조례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2013. 6. 5. 조례 제875호로 개정된 후 2014. 1. 15. 조례 제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2014. 1. 15. 조례 제1141호로 개정된 후 2015. 12. 31. 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공제기간을 포함한다)과 감면비율(공제비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2015. 12. 31. 조례 제1526호로 개정된 후 2017. 3. 22. 조례 제1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삭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제24조의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면제하였거나 면제할 수 있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재산세 면제규정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인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10년간, 최초의 재산세 면제규정이 사업개시일인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본 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2017. 3. 22. 조례 제1824호로 개정된 후 2017. 8. 9. 조례 제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① 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1.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2.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후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후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후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후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후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현행)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로 개정된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③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현행)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끝.